Beyond the RISK
Geopolitical Research

2025. 12. 19

Geopolitical Research

IEEPA 관련 소송 관련 쟁점과

금융시장 영향 예측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삼성증권

EXECUTIVE
SUMMARY

IEEPA 소송 관련 쟁점과 금융시장 영향 예측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에 대해 제기된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심이 진행 중. 美 연방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신속 심리대상으로 지정. 따라서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2월 이내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 대법원 판사들 정치적 성향 구성이 보수 우위임에도 불구, 언론 등에서 트럼프의 승소 가능성을 30% 내외로 평가되고 있음.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에서 패해 상호관세가 취소되더라도, 다른 수단들로 고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천명. 가장 유력한 방안은 '관세법 제338조, 무역법 제122조' 등 관세부과를 위한 사전조사가 필요 없는 법을 이용할 전망.

제338조 '1930년 스무트-홀리 무역법'에 의하면 최대 50%에 달하는 신규/추가 관세가 부과 가능. 다만 이 법은 광범위한 권한에도 불구,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실행된 예가 없음 (협상 수단으로만 활용). 한편 제122조 '1974년 무역법'은 최대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최대 150일 동안만 시행될 수 있다는 한계(연장 시 의회 승인 필요). 이에 따라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활용한 품목관세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어느 법에 의하든 IEEPA에 비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축소. 게다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해서 관세갈등을 더 고조시킬 유인은 낮음.

한편, 판결 이후 관세환급은 난항 예상. 연방 대법원이 '관세 부과는 불법이지만, 이미 걷은 관세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할 경우가 최대 변수. 또한 과거 사례로 볼 때, 상호관세의 위법이 확정된 이후에도 실제 환급은 최대 수년 걸릴 수 있음. 기납부 관세를 '자동 환급'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긴 법적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음.

이상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IEEPA 판결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지속보다 해소의 관점에서 해석할 가능성. 우려했던 트럼프 행정부 패소 이후 대규모 국채 발행 우려가 낮고, 향후 관세관련 갈등이 제한적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기 때문.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 전략팀
유승민 이사
strategist.you@samsung.com

이지혜 연구원
jhye53.lee@samsung.com

IEEPA 소송 관련 쟁점과 금융시장 영향 예측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

▶ IEEPA의 상위법인 NEA의 전신은 1차 대전 당시 제정된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

- TWEA는 1945년~1970년대 초 사이 미국의 냉전전략의 일환으로 제재를 가하는 핵심수단으로 활용

▶ 美가 장기간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는 인식에서 1976년 국가 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y Act; NEA) 제정

- IEEPA는 NEA의 하위 123개 비상법령 중 하나로 1977년에 제정
- 美의 안보, 외교, 경제에 현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경제 거래 규제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적성국교역법(TWEA)에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으로 변천 과정

제1차 세계대전과 TWEA	•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1914~19년) 발발 • 윌슨 대통령, 국제적 위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 필요성 주장 • 1916~17년 중 전시경제 동원 관련 통과된 22개 법령 중 하나가 TWEA. 미국과 적국 간 무역, 투자, 이주 및 통신에 대한 특별 통제권을 행정부에 부여
대공황 이후 TWEA 확장	• 1929년부터 경제 대공황 시작. 이에 따라 전쟁 중에 준하는 재량을 행정부에 위임 시작 • 1931년, 루스벨트 대통령 경제위기를 전쟁에 비유. 비상사태에 맞서는 광범위한 행정권한 요청하며 TWEA 개정 • 1941년 美 제1차 세계대전 참전하며 TWEA 권한 확대 개정 • 1950년 트루먼 대통령, TWEA 근거해 중국, 북한 경제에 대한 규제 단행 • 1971년 닉슨, TWEA 근거 비상사태 선포하고 관세 10% 인상
TWEA를 둘러싼 논쟁	• 베트남전 개입, 국내 정치 갈등,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의회의 행정부 견제 강화 • 1970년대 중반부터 의회에서 TWEA 조사와 개선 요구 증가
NEA와 IEEPA 제정	• 1976년 국가 비상사태법(NEA) 제정 • 1977년 국제비상권한법(IEEPA) 제정 (1985년 이후 8차례의 IEEPA 개정)

자료: 美 의회조사국, 삼성증권

1971년 닉슨 대통령 TWEA를 근거로 관세 인상 * 적성국교역법

▶ **트럼프 이전 역대 대통령 중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경우는 없었음**

▶ **그러나 닉슨 대통령은 통화 위기에 대응하여 1971년 TWEA에 의해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한 전례 있음**

- "나는 달러를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며, 미국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수입량을 직접 통제하는 것보다 국제 무역에 더 나은 해법입니다. 이 수입세는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해 미국 제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공정한 대우가 종료되면 수입세도 종료될 것입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의 TWEA에 근거한 긴급 관세 부과 사례(1971년)

60년대 이후 美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 금 준비, 단기 달러 채무 증가 → 베트남 전비 조달 위한 통화 증가로 달러 가치 하락 → 각국 금 태환 요구 증가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포고령 4074호를 발표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금 태환 정지(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1971년 12월 18일, G10 재무장관 회의(워싱턴 Smithsonian 박물관)에서 브레튼우즈 체제 지속을 위한 협정 체결
: 각국 통화의 달러 대비 평가 절상 (일본 16.9%, 독일 13.6%, 프랑스 8.6%, 영국과 이탈리아 7.5%)과 환율 변동 폭 확대(기존 1% → 2.25%)
: 달러 대비 금 교환 비율 조정(1온스당 35달러 → 38.02달러)

1971년 12월 20일, 닉슨 대통령 관세 부과 철회

자료: 美 의회조사국, 삼성증권

IEEPA 소송 관련 쟁점과 금융시장 영향 예측

트럼프 '19년 멕시코에 IEEPA 근거해 관세 압박

▶ **트럼프는 1기 임기 당시 NEA(50 U.S.C. §1601)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2019년 5월 30일)**

- '멕시코의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불법 이민 위기가 완화될 때까지' IEEPA에 의해 멕시코에 추가 관세 부과 발표
- 2019년 6월 10일부터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5% 관세 부과
- 요구 사항 달성되지 않으면 7월 1일 10% → 8월 1일 15% → 9월 1일 20% → 10월 1일에 25% 등 단계별 추가 인상 경고
- 멕시코가 외교부 장관을 워싱턴에 급파하여 협상을 통해 美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뒤 트럼프가 관세 부과 예고 취소 발표(6월 7일)

2019년 당시 미국 vs. 멕시코 주식시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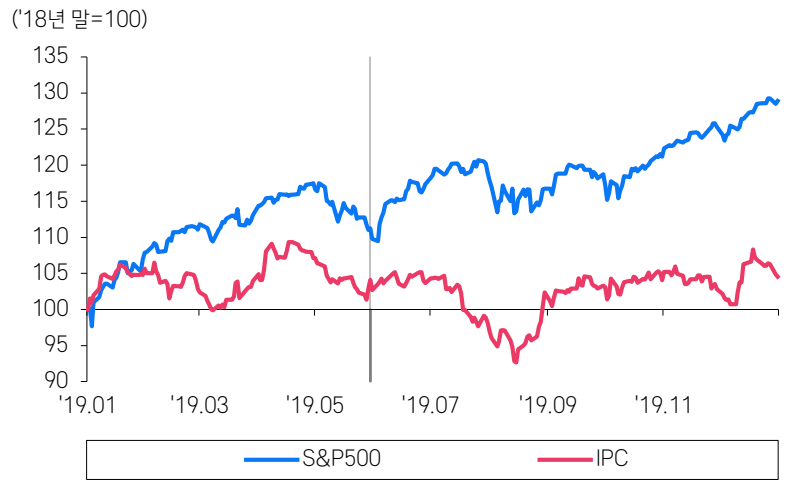

참고: 수직선은 트럼프의 IEEPA에 의한 관세 인상 발표(5월 30일)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2019년 당시 페소화 환율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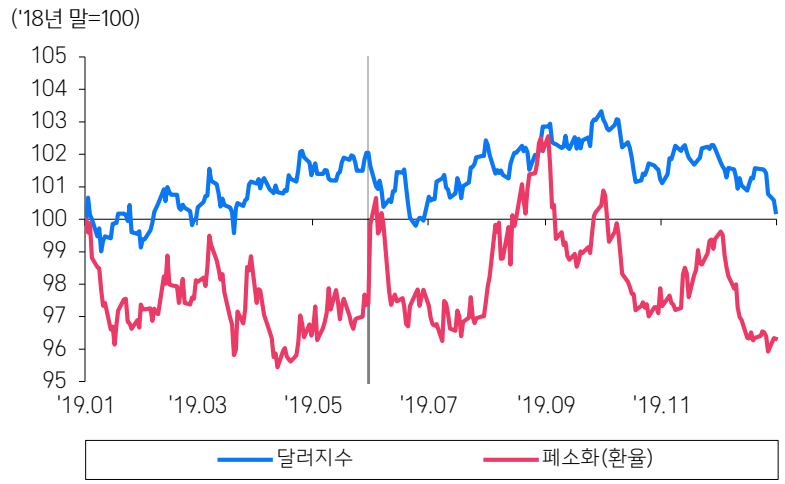

참고: 수직선은 트럼프의 IEEPA에 의한 관세 인상 발표(5월 30일)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IEEPA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 권한 사용 증가 추세

▶ 국가 비상사태법(NEA)에 따라 대통령이 특정 위협으로 인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 IEEPA 적용

-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함
- 국가 비상사태 종료는 의회에서 비상사태 종료를 공동 결의(법 제정) 또는 대통령이 포고문 발표
- 의회의 종료 결의 → 대통령 거부 (재의 요구) → 의회 2/3 이상 결의 시 종료
- 1990년 이후 대통령은 매년 평균 1.5건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평균 4.5건의 행정명령을 발동
- IEEPA 발동 이후 국가 비상사태의 평균 지속 기간은 약 10년 → 국가 비상사태의 수는 NEA와 IEEPA 제정 이후 증가 추세

IEEPA를 인용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 및 행정명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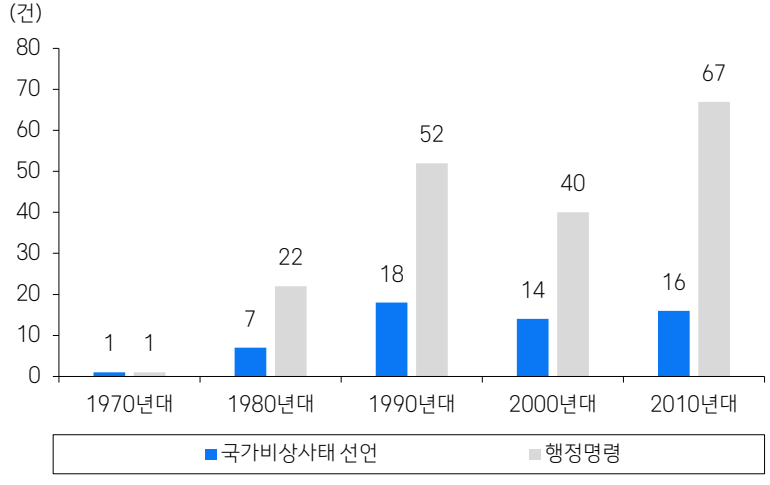

자료: 美 의회조사국, 삼성증권

IEEPA를 인용한 국가 비상사태 상황 지속 평균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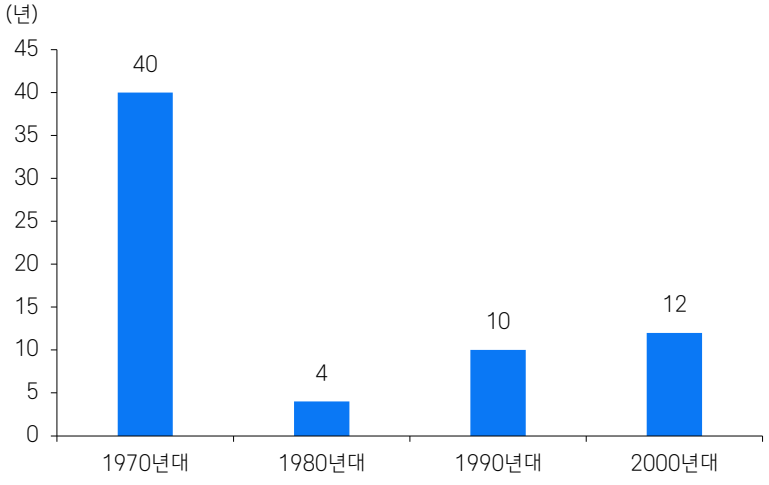

자료: 美 의회조사국, 삼성증권

'25년 IEEPA 관련 관세 부과와 소송 경과

1~2심은 IEEPA에 근거한 관세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한 '위법성', 헌법상 권력분립을 위반한 '위헌성'이 있다고 판결

▶ 트럼프 4.2일 소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를 선포하며 IEEPA에 근거하여 전세계에 상호관세 부과를 일방 선포

▶ 5.28일,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판결

-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조치가 모두 무효이고 집행 금지

▶ 8.29일 연방 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판결

-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발동한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헌법 및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

美 연방 순회항소법원, IEEPA 기반 관세 '위법' 판시

구분	내용
판결 요지	• 다수의견은 IEEPA가 'tariff'나 'duty'와 같은 조세 관련 용어를 포함하지 않으며, 관세 및 세금 부과 권한은 본질적으로 의회에 속한다고 판단 • 따라서 트럼프가 IEEPA를 근거로 하여 거의 모든 국가와 대부분의 품목에 고율의 무기한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
Yoshida 판례와의 구별	• 과거 닉슨 행정부 시절 IEEPA의 전신인 TWEA 하에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Yoshida 판례와 비교 • 법원은 당시 TWEA에 포함된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 문구를 근거로 해당 조치를 정당화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Yoshida 사건과 같은 일시적·한정적 조치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국가와 거의 전 품목에 적용되는 고율·무기한적 관세 • 따라서 과거 Yoshida 판례를 IEEPA 해석에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
주요 법리	•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명확한 입법을 통해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 • IEEPA의 '수입 규제'라는 추상적 표현만으로 대통령이 모든 국가·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반대 의견 (소수 의견)	• 관세가 전통적으로 수입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점을 강조, 의회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석

자료: 삼성증권 정리

현재 美 연방대법원 구성과 성향

연방대법원 판사들 정치 성향은 보수 우위이나 IEEPA 관련 판결 결과는 정치성향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을 전망

▶美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대법관으로 구성.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

- 재판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제한이 없는 '종신직'. 사망, 자발적 사직, 은퇴, 탄핵 등을 제외하고 신분이 보장
- 위헌심사는 6인 이상의 대법관의 출석과 다수결 원리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보통 9인 전원이 출석하므로, 5인 이상 찬성)
- 종신제 특성 불구 트럼프 1기 임기 중 이례적으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임명됨 (이에 따라 현재 정치적 성향은 보수 6 vs. 진보 3으로 평가)

▶보수우위 구성 불구 IEEPA에 대한 불법 or 위헌 판결 시, 트럼프에게는 정치적으로 타격

美 연방대법관 현황 및 성향 분류

이름	Clarence Thomas	John Roberts	Samuel Alito	Sonia Sotomayor	Elena Kagan	Neil Gorsuch	Brett Kavanaugh	Amy Coney Barrett	Ketanji Brown Jackson
취임일	'91.10.23	'05. 9.29	'06.01.31	'09. 8. 8	'10. 8.10	'17. 4.10	'18.10. 6	'20.10.27	'22. 6.30
지명 대통령	H.W. 부시	W. 부시	W. 부시	오바마	오바마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바이든
성향	보수	보수(대법원장)	보수	진보	진보	보수	보수	보수	진보
출생연도	1948	1955	1955	1954	1960	1967	1965	1972	1970
주요 판결									
헌법 상 낙태 권리 부정	찬성	찬성	찬성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EPA 배출가스 규제 위헌	찬성	찬성	찬성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소수인종 대입 우대 위헌	찬성	찬성	찬성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트럼프 대선출마 자격유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트럼프 광범위한 면책특권	찬성	찬성	찬성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자료: 주요 언론 등 종합

IEEPA 관련 연방대법원 소송과 구두변론 쟁점

▶ **11.5일 구두변론에서 대법관들은 대체로 3가지 쟁점에서 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 회의적인 태도**

- (1)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 아닌가, (2) IEEPA 문언상 '관세(tariff)' 직접 위임 부재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인가, (3) 의회가 명확히 위임하지 않은 중대한 권한을 행정부가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중대쟁점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상 대통령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

▶ **변론 이후 언론이 보는 구도는 IEEPA 관세 '불법 4 vs. 합법 3'으로 나머지 불확실 2명 중 1명만 불법으로 판결해도 트럼프 패소**

- 전문가들은 IEEPA가 유지될 확률(=트럼프 승소 확률)을 20~30% 수준에서 예상

美 연방대법관 성향과 IEEPA 관련 구두변론 쟁점

이름	Clarence Thomas	John Roberts	Samuel Alito	Sonia Sotomayor	Elena Kagan	Neil Gorsuch	Brett Kavanaugh	Amy Coney Barrett	Ketanji Brown Jackson
지명 대통령	H.W. 부시	W. 부시	W. 부시	오바마	오바마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바이든
성향	보수	보수(대법원장)	보수	진보	진보	보수	보수	보수	진보
주목하는 쟁점	트럼프 관세부과 권한 보유 주장 지지	관세는 의회권한, but 외교정책으로 관세 중요	트럼프 관세부과 권한 보유 주장 지지	대통령이 의회 권한 침해	대통령이 의회 권한 침해	대통령이 의회 권한 침해	트럼프 관세부과 권한 보유 주장 지지	IEEPA에 관세인상 권한 포함 여부	대통령이 의회 권한 침해
예상 판결	합법	불확실	합법	불법	불법	불법	합법	불확실	불법

자료: 주요 언론 등 종합

패소 시, 트럼프가 우선 사용할 법들

IEEPA 소송에서 패하면 트럼프는 관세법 제338조, 무역법 제122조 등 관련 부처의 사전조사가 필요 없는 법을 사용할 전망

▶제338조, 1930년 「스무트-홀리」 무역법은 최대 50%에 달하는 신규/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차별적 무역관행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나 대통령 조치의 '선결조건'은 아님
- 해당 법령의 광범위한 권한 불구, 美 대통령은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제338조 관세를 직접 부과한 적이 없음 (협상 수단으로만 활용)

▶제122조, 1974년 무역법은 트럼프 행정부의 10% 기준 관세 대체 가능, 최대 150일 동안 일방적 시행 가능 (연장은 의회 승인 필요)

▶단, 위 2개 법을 사용해 IEEPA를 대체하는 관세 부과 시 grace period는 부재할 것

美 대통령에 무역 제한 권한을 부여한 6개 법

이름	대상	최근 부과 예	최대 관세율	관세 부과 기한	사전조사	관세 대상 국가	관세 대상 품목
관세법 제338조 (1930년)	美 상거래 차별 행위	전례 없음	50%	제한 없음	필요 없음	특정 국가	전부 또는 특정
무역확장법 제232조 (1962년)	국가 안보 위협하는 수입 (안보정의가 모호)	트럼프 2기 전략적 품목 관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상무부 조사 (270일 이내)	특정 국가	특정 제품
무역법 제122조 (1974년)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전례 없음	15%	150일 (연장 가능)	필요 없음	전세계	전부
무역법 제 201조 (1974년)	수입 급증에서 일시적 산업 구제	트럼프 1기 세탁기, 태양광	제한 없음	제한 없음	ITC 조사 (120~180일 이내)	전세계	특정 제품
무역법 제301조 (1974년)	무역 협정 위반 포함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	트럼프 1기, 바이든 적용	제한 없음	4년	USTR 조사 (12개월 이내)	특정 국가	전부 또는 특정
국제경제비상권한법 (1977년)	국가 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 또는 특별한 위협	트럼프 2기	제한 없음	국가 비상사태 종료	필요 없음	전세계	전부 또는 특정

자료: 삼성증권

관세부과 전 사전조사가 필요한 기타 법들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201조, 301조는 'Investigate First, Act Later'의 적법 절차(due process) 준수 필요

▶ **제301조는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연장 중인 중국, 브라질(진행 중)에 적용 가능. 기타 국가 대상으로는 사전조사 진행 여부 불투명**

- 다만, 사전조사가 필요한 3개 법의 (아래) 조사기간은 최장이며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단축되고 조기 시행될 여지도 있음

▶ **중기적으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대상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

각 법안의 조사주체, 기간, 결정구조의 차이

이름	무역확장법 제232조 (1962년)	무역법 제 201조 (1974년)	무역법 제301조 (1974년)
핵심 목적	국가안보 위협 대응	산업 피해구제(safeguard) : 급증한 수입품 대응	불공정무역 보복 및 시장 개방
조사 주체	상무부 (DOC)	국제무역위원회 (ITC)	무역대표부 (USTR)
조사 기간	조사 개시 후 270일 이내 대통령 보고	청원 접수 후 120~180일 이내 대통령 보고	조사 개시 후 12개월 이내 대통령 보고 (사안별로 다소 다름)
최종 결정권자	대통령	대통령	USTR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지시)
조치 결정기한	보고서 수령 후 90일 이내	보고서 수령 후 60일 이내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
주요 사례	철강, 알루미늄 관세 (2018), 자동차 조사	태양광 패널, 세탁기 세이프가드(2018)	대중국 관세(2018~), 지재권 침해 조사
특이 사항	안보 정의 모호하여 대통령 재량권 큼	특정 국가가 아닌 전세계 수입품 대상	특정국가를 타겟팅 해 양자협상 압박용 사용

자료: 삼성증권

(품목 관세 부과 중인)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현황

- 현재 9개 품목에 대해 관세부과 중이며, 추가로 9가지 유형의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한 상황

대상	관세율	내용	관련국
철강	25 → 50%	• 트럼프 1기인 2018년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 부과 • 2기 들어 양 금속에 2월에 25%, 6월에 50%로 인상 • '25. 8월에 다양한 제품이 철강,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관세 부과하며 범위 확대 • EU 등에 대한 해당 품목 및 관련 파생 제품에 대한 쿼터 축소 검토 중 • 美는 철강의 25%, 알루미늄은 약 50%를 수입	• 캐나다 • 중국 • 멕시코
알루미늄	25 → 50%		
구리	50%	• '25. 8월에 반제품 구리제품, 특정 구리파생제품에 50% 관세 부과 (美 수입의 절반 차지하는 정제구리는 제외)	• 캐나다 (美 구리 수입의 14% 공급) • 중국 (美 구리 수입의 17%) • 멕시코 (美 구리 수입의 22%)
자동차 및 부품	25%	• '25. 3월에 자동차, 엔진, 기타 부품 등에 관세 부과 • 美는 매년 6,400억달러 이상의 차와 부품 수입해 232조 관세의 최대 영향 품목 • 단, 차 제조업체들은 2030년까지 美에서 조립하는 차 가격의 3.75%에 해당하는 해외공급부품에 대한 환급 가능 • 한국, 일본, EU는 15% 세율 적용. 영국은 10만대 쿼터에 10% 적용 • USMCA 준수하는 차는 조약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한, 美 이외 지역 부품에 부과	• 美는 신차의 거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 : 캐나다, 독일, 일본, 멕시코, 한국, 영국 등 • 부품은 약 60%가 수입 : 멕시코, 중국 순
트럭, 버스	10~25%	• '25.11월 중형 및 대형트럭과 부품에 25%, 버스에 10% 관세 부과 •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입부품 의존하는 트럭제조 업체는 3.75% 환급 • USMCA 규정 적용도 동일	• 美는 중형트럭의 25%, 대형의 40% 수입 • 버스는 5% 불과 • 캐나다, 멕시코가 약 50% 공급, 중국 9%
목재, 가구	10~25% → 최대 50% 예정	• '25.10월에 연목 및 목재에 10%, 원목가구 및 주방 캐비닛에 25% 부과 • '26. 1월부터 소파, 의자는 30%, 주방 캐비닛은 50%로 인상 • 영국산 제품은 10%, 일본, 한국, EU산은 15% 상한선 적용	• 美는 목재 소비의 30% 수입 : 캐나다(30% 공급), 베트남(26%), 중국(11%)

자료: 삼성증권 정리

IEEPA 소송 관련 쟁점과 금융시장 영향 예측

무역확장법 제232조 추가 적용을 위한 조사 품목

대상	관세율	내용	관련국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엔진	조사 중	• 일본, 한국, 영국, EU,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항공기 및 부품에 관세 면제 • 브라질은 10% 관세 부과	• 美는 항공우주 순 수출국이나 상업용 항공기, 제트엔진, 부품 등은 수입이 더 큼 • EU(50% 공급), 캐나다(25%), 영국(8%), 중국, 인도 순
의약품	조사 중	• 영국은 예외 대상 약속이나 최종 확정 전 • 한국, EU, 스위스 등은 15% 상한선 • 제네릭 의약품 및 성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가 면세 • 한편 주요 빅파마에 대해서 특정 약가 인하 매개로 관세 유예 허용 예정	• 美는 제네릭 의약품 정제와 캡슐의 80% 수입 • 모든 브랜드 의약품의 약 50% 수입 의존 • 아일랜드가 공급량 기준 1위나 절세 목적 때문이며, 중량기준으로 중국이 44% 공급 • 美는 원료의약품(API)의 88%를 해외 조달 • 인도 32% 공급, EU 20%, 중국 8% (그러나 제3국 경유 감안하면 인도 70%로 추정)
반도체	조사 중	• EU는 15% 관세 상한선 적용, 일본은 최혜국 대우, 한국은 대만보다 높지 않게 • 기업들이 美로 생산시설 이전할 경우 면세	• 美 수입의 80%를 5개국이 담당 (집중도 높음) • 중국 25% 이상 공급, 대만 20%, 멕시코 15%, 한국 순
가공광물	조사 중	• 배터리 풍력터빈 등에 사용되는 중요광물, 파생제품에 관세부과 고려 중	• 美는 12개 필수광물을 전적으로 해외에서 조달 • USGS가 경제,안보 필수로 지정한 광물 28개 중 수요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 • 광물 수입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남아공 16% 공급(백금, 로듐, 팔라듐), 캐나다 15%(원자력 발전용 우라늄, 아연 등) •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6% 이나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압도적 의존

자료: 삼성증권 정리

트럼프 IEEPA 패소해도 관세 환급의 불확실성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최대 리스크

▶ 대법원이 "관세 부과는 불법이지만, 이미 걷은 관세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Prospective Application)"라고 판결할 경우

▶ 과거 일부 무역 소송에서 법원은 "이미 종료된 행정 행위까지 뒤집으면 국가 재정에 지나친 혼란을 준다"는 논리로 환급을 불허

상호관세가 위법 확정 이후 기 납부한 관세는 '자동 환급'이 아니며 매우 복잡하고 긴 법적 분쟁 지속 가능성

▶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자동환급 절차 없으며, 수입업자 개별적으로 신청 필요

- 상호관세 부과는 통관 1년 지나지 않은 미확정건(Unliquidated Entries)
- 수입업자가 사후 정정 신청(PSC: Post Summary Correction) 통해 관세율 수정을 요청

▶ 과거 사례로 볼 때 관세의 실제 환급은 최대 수년 걸릴 수 있음

- 과거 유사 사례(항만유지세 위헌 판결 등)를 볼 때, 실제 현금이 기업 통장에 들어오기까지는 판결 후 최소 2~3년 소요 가능성
  → 수백만 건의 환급 청구가 일시에 몰리면 CBP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어 물리적인 처리에 시간 소요
- 미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재정 타격을 줄이기 위해 "판결 효력은 미래에만 적용된다(Prospective only)"고 주장하며 절차를 어렵게 할 가능성
  → 과거 징수분의 환급을 거부.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는 증명 요구 등 (이 경우 환급을 위한 추가 소송 필요)

▶ 이에 따라 우려와 달리 IEEPA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국채발행 가능성은 낮음

IEEPA 소송 관련 쟁점과 금융시장 영향 예측

내년 트럼프는 관세갈등 심화보다 안정추구 가능성

- 비상경제권한법(IEEPA)가 위헌, 위법 판결을 받으면 관세법 제338조, 무역법 제122조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어느 법이든 IEEPA에 비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축소
- 트럼프 중간선거 승리 위해 업적 수립 및 경제 안정 추구 예상,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는 (유권자 결집 위해) 대중 견제 지속
- 그러나, 게임이론 측면에서는 (경제 안정 위해) 관세 갈등의 고조보다 안정 관리가 트럼프의 최선 선택 예상

'26년 주요 국내외 정치 일정 및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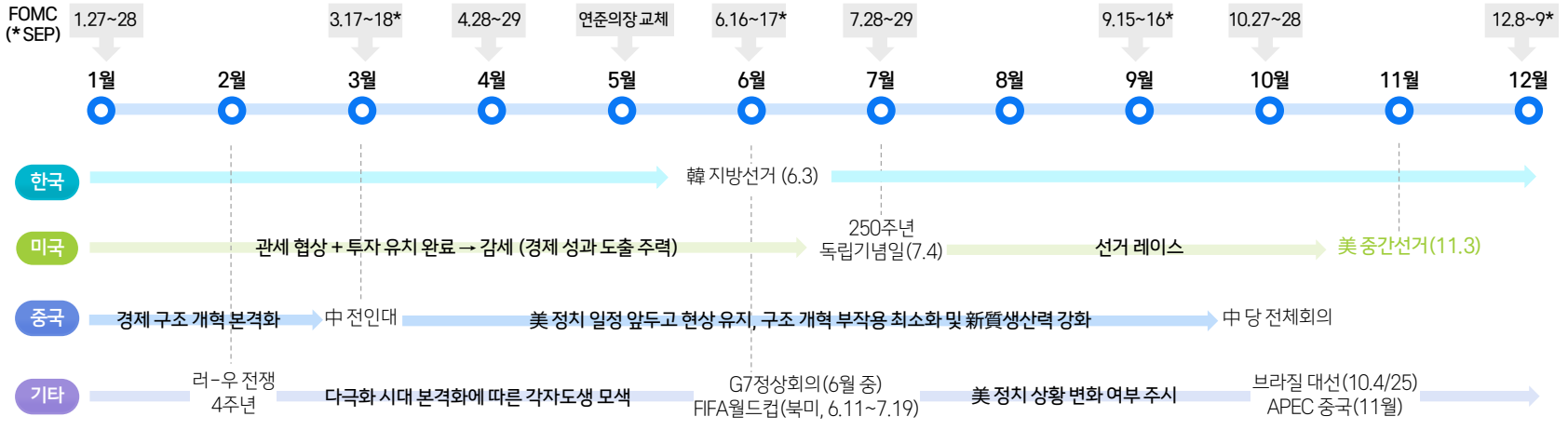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정리

IEEPA 소송 관련 쟁점과 금융시장 영향 예측

트럼프 패소할 경우, 관세를 통한 배당 지급 가능성도 낮음

관세 배당 지급의 주된 명분은 관세 세수 확보로 부유해진 재정 혜택을 미국인에게 돌려주겠다는 것

▶ 만약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세수 환급해야 할 경우 배당 위한 재원 확보에 결함 불가피

- 입법 과정 또한 난항 예상. 세금/지출 관련 사항은 무조건 의회 합의를 거쳐야 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선 상원 60석 이상의 찬성 표가 필요
- 민주당의 비협조는 물론이며, 공화당 재정 보수주의자들의 반발도 예상
- 물론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단순 과반으로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시 배당 목적과 재정이 가장 큰 논란이 될 것

트럼프, 관세 배당 2,000달러 지급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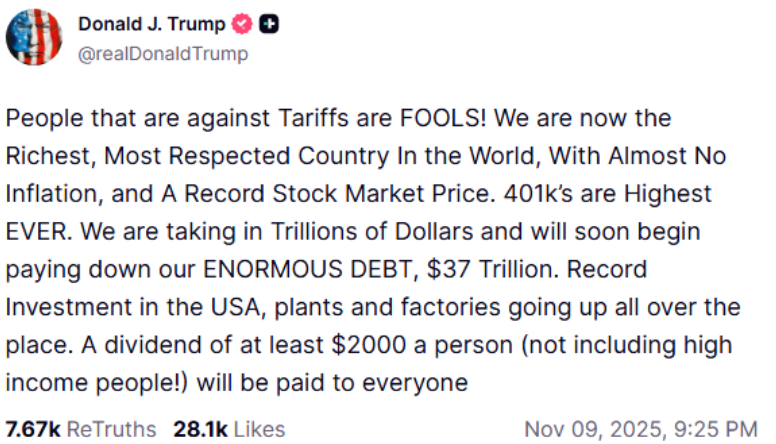

자료: Truth Social, 삼성증권

연간 2,000달러 배당 지급 시 재원 규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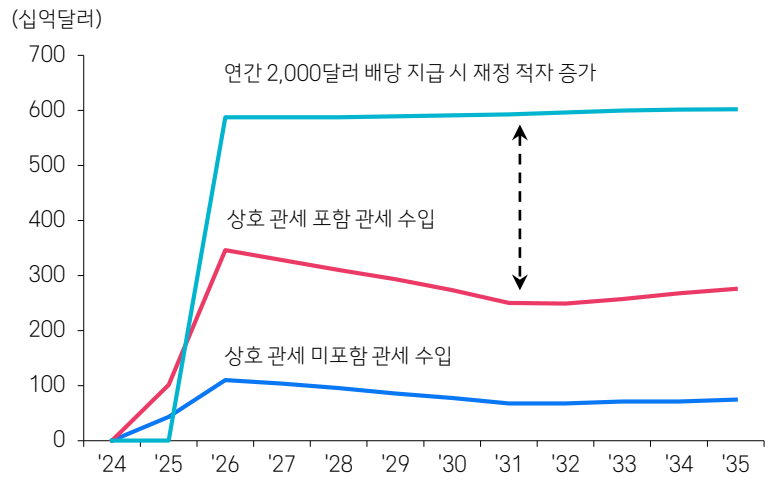

자료: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삼성증권

(참고) 美 대통령에 무역 제한 권한을 부여한 6개 법: 대상, 내용, 조치 대상

- 아래 5개 법에 의해서 美 대통령은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며, 법 제정의 목적이 점차 확대되어 옴

법률 조항	제정	대상	내용	대상
관세법 제338조 (19 U.S.C. § 1338)	1930년	• 외국에 의한 美 상거래 차별 행위	• 美 상거래를 차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 • 해당 외국에서 美로 상품 수입을 금지	• 특정 외국으로부터의 (또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해당 국가의 특정 세분)수입품
무역확장법 제232조 (19 U.S.C. § 1862)	1962년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품 및 그 파생상품의 수입 조정	• 모든 국가로부터의 특정 제품 수입
무역법 제122조 (19 U.S.C. § 2132)	1974년	•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 수입 제품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 또는 쿼터를 일시적으로 부과	• 대통령이 더 많은 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상품 수입
무역법 제201조 (19 U.S.C. § 2251)	1974년	• 수입 급증에서 美 산업 일시적 구제 (글로벌 세이프가드)	• 수입관세, 관세할당(TRQ), 수량제한(쿼터), 무역조정지원(TAA) 등을 실시	• 모든 국가로부터의 특정 제품 수입
무역법 제301조 (19 U.S.C. § 2411)	1974년	• 무역 협정 위반을 포함한 불공정한 대외 무역 관행 또는 정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고 美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행위	• 美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또는 기타 무역 제한을 부과하도록 지시 • 무역 협정 양허를 철회하거나 중단 • 대상 국가가 문제가 되는 관행을 제거하거나 美에 보상적 무역혜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하도록 지시	• 특정 국가로부터의 모든 제품 수입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 50 U.S.C. § 1701)	1977년	• 국가 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한 위협	• 수입 금지 또는 제재 부과 수입 및 수출 차단 • 다양한 유형의 거래, 판매 및 인수 차단	• 외국 국가, 조직 또는 개인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 및 통화를 포함한 재산

자료: 삼성증권 정리

(참고) 美 대통령에 무역 제한 권한을 부여한 6개 법: 권한 제한

법률 조항	대통령 권한에 대한 제한
관세법 제338조 (19 U.S.C. § 1338)	• 최대 50%의 관세율 • 조치는 외국(또는 해당 국가의 일부)에 한정
무역확장법 제232조 (19 U.S.C. § 1862)	• 대부분 없음 • 다만 대통령의 조치가 석유 또는 석유 제품의 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의회는 비승인 결의안을 통과시켜 효력을 상실 시킬 수 있음
무역법 제122조 (19 U.S.C. § 2132)	• 최대 15%의 관세율 / 의회의 적극적인 조치로 연장하지 않는 한 조치 기간은 150일로 제한 • 쿼터는 수지 균형 조치로서 쿼터 부과를 허용하는 기존 국제 무역 또는 통화 협정이 있고 관세만으로는 근본적인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음
무역법 제201조 (19 U.S.C. § 2251)	• 관세율 제한 없음 • 최대 4년간 조지 적용되며 1회 연장 가능하나 최장 8년으로 제한
무역법 제301조 (19 U.S.C. § 2411)	• 조치가 외국에 특정 되어야 함 • USTR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조치는 美 상거래에 부과되는 부담 또는 제한과 동등한 가치이어야 함 • 문제가 되는 관행이 美 무역 협정의 조항 (WTO, FTA 등)인 경우, USTR은 관련 협정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절차를 개시해야 함 • 조치가 4년 이내에 취해지고 그 4년이 끝나기 전에 301조 조사 청원인이나 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는 국내 산업 대표자가 조치 지속 요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치는 4년이 끝나면 종료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 50 U.S.C. § 1701)	• 대통령 또는 의회가 국가 비상사태법(NEA)에 따라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할 때까지 유효

자료: 삼성증권 정리

(참고) 美 대통령에 무역 제한 권한을 부여한 6개 법: 권한 제한

법률 조항	권한 행사의 전제조건	의회에 대한 보고 시 요구 사항
관세법 제338조 (19 U.S.C. § 1338)	• 대통령 또는 美제무역위원회(ITC)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상거래와 비교하여 외국에 의한 美 상거래 차별의 존재	• 없음
무역확장법 제232조 (19 U.S.C. § 1862)	• 특정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보고서 발행	•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대통령은 조치를 취한 (또는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무역법 제122조 (19 U.S.C. § 2132)	• 대통령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음	• 없음
무역법 제201조 (19 U.S.C. § 2251)	• ITC가 120일(복잡한 사안은 150일) 이내에 수입급증과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 조사 (60일 이내 대통령이 조치)	•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대통령은 조치를 취한 (또는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무역법 제301조 (19 U.S.C. § 2411)	• USTR은 301조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를 수행한 301조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또는 위임)해야 함	• USTR은 반기별로 하원과 상원에 301조 청원서 제출 및 결정, 진행 중인 301조 조사 또는 절차의 상태, 취한 조치 또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취한 조치의 상업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 50 U.S.C. § 1701)	• 국가 비상사태법(NEA)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됨 • 대통령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경우" 의회와 협의해야 함	•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요소(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 행사된 권한 및 취해진 조치, 조치의 영향을 받는 국가)와 해당 사실적 요소에 비추어 해당 조치를 행사하는 정당성을 의회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대통령은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지난 보고 이후 취한 추가 조치와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 보고한 사실 및 정당성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함

자료: 삼성증권 정리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